

지방계약법 고시금액 변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고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제한 대상공사와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 지역제한 대상공사 및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적용 범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제한 대상공사	국가	종합공사 : 76억원 미만 전문/설비 : 7억원 미만	종합공사 : 95억원 미만 전문/설비 : 변동없음
	지자체	종합공사 : 100억원 미만 전문/설비 : 7억원 미만	종합공사 : 변동없음 전문/설비 : 변동없음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	국가	76억원 미만	95억원 미만
	광역지자체	229억원 미만	284억원 미만
	공기업·준정부기관	229억원 미만	284억원 미만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 2억 5천만원
 - 공사 : 95억원
-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 9천만원
 - 공사 : 95억원
-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 1억 9천만원
 - 공사 : 95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 8억 5천만원
 - 공사 : 284억원
-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 8억 5천만원
 - 공사 : 284억원
-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 7억 6천만원
 - 공사 : 284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 2억 5천만원

- 부 칙 -

- ①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8호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84억원이상, 물품·용역 3.8억원이상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고시 2008-57호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폐지한다.